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2서식] <신설 2025. 6. 20.>

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 (연고자 등)

(00-0000-0000)

제 0000-00000 호 . . .

수 신: ◯◯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제 목: **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**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등을 분리·인도하여 아래 연고자 등이 보호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.

피해아동 1	성 명		생년월일(나이)	
	전화번호			
연고자 등	성 명			
	주 소			
	피해아동과의 관계		전화번호	
피해아동 2	성 명		생년월일(나이)	
	전화번호			
연고자 등	성 명			
	주 소			
	피해아동과의 관계		전화번호	
피해아동 3	성 명		생년월일(나이)	
	전화번호			
연고자 등	성 명			
	주 소			
	피해아동과의 관계		전화번호	
통보인 인적사항	성 명		소 속	
	전화번호		직 급	

소속:

사법경찰관리(주무관) (서명 또는 인)